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된 안마사에 대하여 안마사 자격정지에 관한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2024. 5. 1.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안마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제9조 제2항 신설)

- 1)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안마사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장
-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안마 관련 품목을 지정받은 시설의 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안마사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안마 관련 품목을 지정받은 시설의 장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른 안마사·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①「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른 안마사·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신 설>                                                                        | ②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라<br>“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안마사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장<br>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안마 관련 품목을 지정받은 시설의 장 |